

일반대학원 성신교정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2. 3. 1

개정 2019. 3. 1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각 학위과정과 연구과 과정의 학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각 학위과정’이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7.1.]

② ‘연구과 과정’이란 사제서품과정 등 학부 졸업 후 이어지는 3년의 상급과정을 말하며, ‘연구과 생’이란 대학원에 적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과 과정에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

[조 신설 2008.3.1.]

제1장 입학

제3조(입학지원자격) ① 각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08.3.1]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08.3.1]

3. [삭제 2016.7.1]

② 학사학위과정 신학비전공자가 전항의 자격을 갖추어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3.1],[개정 2016.7.1],[개정 2018.9.1]

제4조(입학지원서류) ① 각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주민등록초본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다. 석사학위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주민등록초본

② 외국 대학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 증명서 원본(또는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전형방법) ① 일반전형의 전형방법은 전공과목 필기시험과 외국어 필기시험으로 한다. 다만 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가 본교 대학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로 한다.

③ 필요한 경우 각 전형에 면접·구술심사를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전형 필기시험) ① 전공과목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하위과정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대학 전학년 성적

2.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 전학기 성적

3. [삭제 2016.7.1]

② 외국어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석사학위과정은 1종,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2종의 외국어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6.7.1.]

1. 석사학위 과정 : 영어 [개정 2019.3.1.]

2. 박사학위 과정

가. 제1 외국어: 영어

나. 제2 외국어: 독어, 불어, 라틴어, 이태리어, 일어, 스페인어 중 택 1. 단, 학사학위과정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라틴어 의무 응시 [개정 2018.9.1., 2019.3.1]

③ 외국어 필기시험의 범위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석사학위과정 지원자 중 학사학위과정 신학비전공자의 필기시험은 전공시험과 라틴어를 포함한 2종의 외국어시험으로 한다. 전공시험은 선수과목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7.1.][개정 2018.9.1]

제7조(입학시험의 배점 및 비율) 입학시험의 배점 및 반영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개정 2016.7.1]

과 정	전공시험	외국어시험		합계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석사학위과정	60점 (60%)	40점 (40%)	-	100점 (100%)
석사학위과정 (신학비전공자)	60점 (60%)	20점 (20%)	20점 (20%)	100점 (100%)
박사학위과정	60점 (60%)	20점 (20%)	20점 (20%)	100점 (100%)

제8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 입학시험 문제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은 대학원교학부장이 매 학기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은 교내교수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입학시험 출제 및 채점) ① 입학시험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점은 2인 이상의 복수 채점을 원칙으로 하며, 채점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과목별 점수로 인정한다.

제10조(입시사정) ① 부총장은 교무위원회를 열어 입시사정회를 갖는다.

② 사정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편입학)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재입학) ①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②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잔여 회수에 한한다.

③ 재입학한 학생의 자퇴 및 제적 이전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학비 감면) 성신교정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성직자, 수도자에게는 매 학기 등록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4조(학기 인정 일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 중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② 수업일수 2/3를 경과한 자가 군입대할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소정의 평가를 한 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수강신청) ① 당해 학기 등록한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개강 후 2주가 경과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조의 신설로 제2조 내지 제14조를 제3조 내지 제15조로 변경 2008.3.1]

[제15조(학기당 이수학점) 삭제 2008.3.1]

제16조(석사학위과정의 학점 이수)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하며, 공통필수 16학점과 전공선택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 2015.3.25]

② 전공선택의 이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

1. 전공분야 6학점 이상

2. 인접전공 3개 분야에서 8학점 이상

3. 전공세미나 4학점

4. 전호에 의한 학점 이수가 곤란하여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대학원 교학부장의 상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1]

③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 연구과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거나, 이미 연구과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정규교과목, 전공세미나, 원전연구 등을 통하여 잔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3.1]

제17조(박사학위과정의 학점 이수) ①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정규교과목 수강에 의한 학점 취득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학점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6.7.1]

1. 지도교수 지도하의 강의 및 세미나 개설

가. 과목당 2학점을 인정한다.

나. 학생은 강의 및 세미나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가 부여하는 원전연구(Reading Course)

가. 각 2학점, 총 10학점까지 인정한다.

나. 학기 초 연구일정계획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결과보고서(A4용지 5매 이상) 2부를 당해 학기 종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원전연구(Reading Course)에 대한 성적 평가는 지도교수와 심사교수(1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부여한다.

제18조 [삭제 2016.7.1]

제19조(연구과 과정의 학점이수, 종합시험, 수료논문 등) ① 연구과생은 제16조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석사과정의 학생과 동일하게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② 연구과 과정의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을 준용한다.

③ 연구과생은 연구과 과정 수료 전에 수료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수료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연구과 과정의 과목별 유효성적은 C급(70점)이상으로 하며, 수료성적은 총 평점평균 2.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9.1]

[조 신설 2008.3.1]

제20조(서품과정필수과목 이수) 각 학위과정의 학생 중 사제직을 지망하는 학생은 서품과정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8.3.1]

제21조(어학과목 이수) ① 학생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 관련 외국어 어학과목(중급과정 고전어 및 현대어)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

② 전항에 의한 이수학점은 전공선택 인접전공 이수학점으로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생이 개인적으로 어학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0.3.1]

제22조(타 학과의 교과목 이수) 학생은 지도교수와 대학원교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총 9학점 이내에서 타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① 연구과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이미 이수한 연구과 과정의 학점 중 24학점까지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박사학위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인정학점은 24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의 학점인정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7.1],[개정 2018.9.1]

③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과 동시에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교학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학점교환) ① 우리 대학원과 학점교환협정이 체결된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점교환협정이 체결된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양 대학원간의 학점교환내규에 따라 인정한다.

제25조(동일과목 학점 이중취득)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한 성적 및 학점은 후에 취득한 성적 및 학점을 인정한다.

제26조(성적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의 교과목 성적을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27조(성적 정정)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시험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전공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교학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신청서
2. 성적증명서

제29조(합동강의) ① 2명 이상의 교수가 한 과목을 담당하는 합동강의 신청은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강의계획서에는 주차별 강의담당 교수를 포함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합동강의에 대한 강의시간수 계산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30조(등록) 학위논문 제출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편입학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7.1]

제31조(휴학) ①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 및 회수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입대와 수도권회 수련,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1]

제32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33조(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8.3.1]

② 종합시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3.1]

제34조(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①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준비 중인 박사학위 청구논문 일부에 대한 공개강의(Lectio Coram)로 한다. [개정 2016.7.1]

② 논문공개강의의 응시시기와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

1. 논문공개강의는 박사학위과정 3학기부터 6학기(편입학자는 4학기부터 6학기)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 경과하여 응시하는 자는 대학원 교학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논문공개강의 신청자는 발표 희망일 1개월 전에 신청서와 함께 강의초록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전공분야 주임교수, 전문분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4. 논문공개강의에 대한 심사는 교수(教授)측면과 연구측면(강의, 논문주제, 논문 스케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과 평균 B(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6. 논문공개강의에 합격한 자는 1년 후 박사학위 논문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③ 논문공개강의 강의초록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준비중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연구 주제 및 주제 선택의 동기
 - (2) 연구 주제의 범위
 - (3) 연구의 기대 효과
 - (4) 연구 방법
 - (5) 논문의 목차
 - (6)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
 - (7) 앞으로의 연구 과제 및 방향
 - (8) 참고 문헌
 - (9) 금일 발표주제(준비중인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의 원고
 2. 규격 : A4 용지
 3. 분량 : 제한 없음

제5장 학위논문

- 제35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은 입학 후 2주 이내에 논문제목 및 본교 교원 중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9.1]
-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전임교원(성심, 성의교정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외부 인사에게 논문지도를 의뢰할 경우에는 대학원교학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1, 2012.7.22]
- ③ 논문지도교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지도교수변경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1]
1. 수료학점(석사학위과정: 36학점, 박사학위과정: 60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80점) 이상인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자는 논문학기를 등록한 자.
- 제3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기별 제출 마감일(1학기:5월 10일, 2학기:11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논문 4부
 2. 박사학위과정 - 논문 6부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에는 논문유사도검사 이용확인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

제38조(논문 제출연한)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내에, 박사학위청구논문은 10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사목활동, 수련 등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휴학기간은 논문 제출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

② 논문 제출연한을 경과하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교학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논문심사 학기)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각 학위과정 최종 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4학기

2. 박사학위과정 - 6학기

3. [삭제 2016.7.1]

②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교학부장과 협의하여 논문심사를 한 학기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논문심사에 합격하더라도 최종학기까지 등록하여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40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예비심사의 경우 3명, 본심사의 경우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전임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으로 한다.

제41조(논문심사)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본심사로 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1,2차)와 본심사로 한다.

제42조(예비심사) ①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예비심사일에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이 학위논문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심사하고 수정·보완 및 당해 학기 완성가능성을 판정한다.

③ 1, 2차의 예비심사 결과 당해 학기내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본심사를 한 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제43조(논문심사 및 판정) ①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지정한 논문 구술심사일에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과 평점평균 3.0(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과 평점평균 3.0(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44조(학위논문 체제와 규격)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 “기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학위논문 제출) 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제출기한(1학기-7월 31일, 2학기-1월 31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11부
 2. 논문 전문이 실려있는 디스켓(국문, 영문 초록 포함)
- ② 전항에서 정한 제출기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보류한다. [개정 2013.3.1.]

제6장 학위수여

제46조(학위수여 자격) ①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80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5. 시행세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한 자

② [삭제 2016.7.1]

제47조(의결 및 승인) 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48조(학위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9.9.1]

제7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49조(대학원운영위원회) 대학원학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성신교정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각 전공(종교철학,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교학부장이 맡는다. [개정 2008.3.1]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부총장이 임명한다.

제51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학칙 제43조의 규정 중 성신교정 일반대학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소집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19조 내지 제20조의 신설로 제21조 내지 제50조를 제23조 내지 제52조로 변경 2008.3.1]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개정 시행세칙(제32조,제34조,제38조,제39조,제40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관련 제규정은 폐지한다.

② 이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입학자 중 사안에 따라 입학당시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입학당시 시행세칙 적용여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논문 제출연한 연장 적용은 2002학년도 3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

⑤ 본 시행세칙 제16조제2항은 2003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33조, 제50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 제16조, 제19조, 제20조는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35조, 제48조)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21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5조 제2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45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6조)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1조)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6조)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6조, 제23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6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 ○ ○ ○ ○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 ○ 박사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 ○ ○ ○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 ○ 박사 ○ ○ ○

가톨릭대학교

학위번호 :

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 ○ ○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 :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 ○ ○ ○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사 ○ ○ ○

가톨릭대학교

학위번호 :

명예박사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나라 학술과 문화에 큰 공헌을 하여 인류 문화 발전에 큰 공적을 나타냈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위명) 수여를 추천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위의 증명에 의하여 (학위명)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사 ○ ○ ○

가톨릭대학교